

# 2023년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22.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연희, 박재화,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0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55건(안건번호 제2023-40281호~4233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40281호(순번 1번)는 유사한 내용의 상품 설명을 제작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실질적 유사성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고 충분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40282호(순번 2번)는 오픈채팅방에서 웹소설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40283호~40291호(순번 3번~11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

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40292호~40296호(순번 12번~16번)는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40297호~40343호(순번 17번~63번)는 블로그에서 뮤직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40344호~40357호(순번 64번~77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40358호~42335호(순번 78번~2055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32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의 민원·권리자명 등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3-116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53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민원인 제품의 상세설명 내용을 '■■■ ■■■■■■■'의 유사 제품 판매자가 도용했다는 취지로 신고된 사안 총 1건임. 민원인은 제품 판매 회사의 직원이라고 스스로 밝힘.  
심의대상 게시물은 '■■■ ■■■■■■■'에서 '♠♠♠♠ ♠♠♠♠'

♣♣♣♣ ♣♣♣♣♣'의 판매를 위해 직접 제작한 영상 및 상세 설명을 게시하고 있음.

심의 대상 게시물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인 제품 판매게시물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이미지 및 문구는 발견되지 않음. 유사한 두 제품의 유사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일부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명칭이 발견되기는 하나, 주된 문구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민원인 게시물을 복제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민원인의 주장 요지는 '표절' 즉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임.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아닌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권리자 증명,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 모두 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는 영역이며 관련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실질적 유사성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고 충분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 권고의 부결 의견임. 만일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원저작물과 유사하게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해당 건은 대부분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본인들만의 창작물

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부결에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을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오픈채팅방을 통해 웹소설의 불법복제물을 텍스트 파일로 판매 중인 사안 총 1건임.

순번 2번은 '○○○○○' 오픈채팅방으로, 민원인은 해당 오픈채팅방에서의 채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음. 채팅방의 이름인 “▼▼▼ ▼▼▼” 및 민원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으로 볼 때 오픈채팅방은 오로지 불법복제물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으로 보아 불법복제물을 판매 중인 사실 또한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음.

순번 2번의 오픈채팅방의 이름, 민원인과의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임이 명확한 텍스트 파일을 다수 보유·전송하고 있으며, 오로지 불법복제물의 전송만을 위해 해당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 및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번 오픈채팅방을 통해 판매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오픈채팅방을 폐쇄하게 되는데, 포털 블로그처럼 블로그는 이용 못하게 하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오픈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만 거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OSP에 의하면 시정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오픈채팅방을 폐쇄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오픈채팅방 내의 내용이 전부 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때문에 오로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위한 경우, 즉 일반 대화가 없다는 것을 소명할 정도의 자료가 제출된 경우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는데, 해당 안전은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3번 내지 1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에서 '○○ ○○ ○' 또는 '□ □□□'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3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번 내지 11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11번에 대해 가결하

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12번 내지 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2번 내지 16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계속 심의해왔던 사안으로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번 내지 16번은 삭제 및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 내지 6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81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7번 내지 63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 내지 63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4번 내지 7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와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81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만화 ‘♡♡♡’, ‘○○’, ‘♠♠♠♠’의 아직 국내 유통 전인 최근 연재 회차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불법복제물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일부 게시물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취미 목적이 강해 보임. 권리자 신고도 아니고 모니터링에 의해 저런 게시

물까지 찾아내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듬.

- B 위원: 그러한 게시물을 모니터링 단계에서 판별해 제외하기에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A 위원: 불법복제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원의 행정력을 저런 게시물에까지 소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히 의견 더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4번 내지 77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8번 내지 205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32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9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임. 2023. 5. 3. 극장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150분 분량을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에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2번은 영화 '에어'로,

2023. 4. 5.에 극장 개봉한 최신 영화의 전체 112분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임.

(영화 '렌필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0번은 영화 '렌필드'임. 2023. 4. 19.에 극장 개봉하여 OTT 등에서 합법 판매중인 영화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78번부터 2055번까지 총 3325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8번 내지 205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40281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제2023-40282호(순번 2번) 대해 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40283호~42335호(순번 3번~2055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5.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